

## 한국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운영지침

[2023. 6. 1. 시행] [시행세칙 제2023-9호, 2023. 5. 31. 전부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사업의 국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UNESCO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이하 “GNLC”라 한다)란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NESCO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이하 “UIL”이라 한다)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제도시 네트워크를 말한다.
2. “GNLC 국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적 특색에 맞는 GNLC 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내 GNLC 가입도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GNLC 국내 활동 운영 업무 전반에 적용하며,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GNLC 사업의 국내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GNLC 가입 국내 심사 및 후보 추천
2.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국내 심사 및 후보 추천
3. 협의회 운영
4. GNLC 운영 지침 제·개정
5. 국내외 GNLC 교류 및 활동 협력
6. 그 밖에 GNLC 운영에 부합하는 활동

### 제2장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운영

**제5조(GNLC 가입 절차)** ① GNLC 신규 가입 절차는 UIL의 방침에 따라 2년에 1회 진행되며, 평생교육법 제15조1항에 의거하여 국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구 중 GNLC 가입을 희망하는 도시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국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GNLC 가입 국내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도시 구축의 기초 여건
2. 학습도시의 주요 구성 요소
3. 학습도시 구축의 포괄적 성과
4. GNLC에 대한 기여

③ 사무총장은 5인 이내의 평생교육 전문가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신규 가입 신청 도시들을 심사하며, 심사한 전문가에게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 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심사평가단은 평가회의를 열어 국문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신청 도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고득점순으로 최대 3개의 후보 도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때 심사평가단이 국문 가입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도시를 대상으로 추가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심사평가단은 심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정 청탁 또는 금품 등을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입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 또는 요청을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심사평가단에게 비밀유지 및 청탁금지를 위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선정된 후보 도시는 UIL이 제공한 영문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UIL에 해당 도시를 GNLC 도시로 추천한다.
- ⑧ 제출된 영문 신청서는 UIL에서 심의 후 최종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도시 활동 및 경과보고서 제출)** ① GNLC 가입도시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내외 GNLC 활동 및 교류
  - 2. 국내외 평생학습 관련 회의 및 워크숍 참가
  - 3. UIL에서 운영하는 유네스코 학습도시상(UNESCO Learning City Award) 신청
  - 4. 그 밖에 GNLC 운영에 부합하는 활동
- ② GNLC 가입도시는 2년마다 UIL에서 요청하는 GNLC 활동 경과보고서(영문)를 작성하여 UIL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GNLC 가입도시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IL의 방침에 따라 회원자격이 갱신되지 않는다.
- 1. 제6조 2항의 경과보고서를 기한내 미제출했거나 미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2. 학습도시 구축 과정에 있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제7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국내 GNLC 가입도시 관계자들로 구성한다. 가입도시별 최대 2인까지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GNLC 업무 담당부서의 부서장 및 실무자 각 1인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GNLC 국내 총괄기관으로서, 협의회 운영 업무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 ③ 협의회는 GNLC 국내외 동향 공유 및 상호학습, GNLC 국내 홍보 및 제반 관련 사항 추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국내 관계 기관·단체는 협의회 회의 시 참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참여도시들 가운데 희망 도시들을 대상으로 협의회 운영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개정)** 본 지침은 사무총장이 개정한다.

**부 칙 <2023. 5. 31 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1. 비밀유지 및 청탁금지를 위한 서약서